##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2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해식・위성락・남인순

박 정・박용갑・한병도

염태영 • 박상혁 • 박정현

서영석 · 서영교 · 정을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2(국회경찰)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다.
  - ② 국회경찰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 국회경찰의 조직, 업무 지역 및 직무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4조의2(국회경찰)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 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 다. ② 국회경찰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 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 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한 다. ③ 국회경찰의 조직, 업무 지역 및 직무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